

의안번호	제 604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4년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4
----------	-----

제출연월일 : 2024. 5.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조례 위임 사항 반영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의 대부료 신설(안 제30조제4항)
 - 2024. 제정된 조례*와 동일하게 학교협동조합 대부료를 정비

·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이상**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2024.2.16. 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임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조건 완화(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62조제1항)

납부조건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기준금액	‘100만원’→ ‘50만원’으로 하향	50만원 초과
횟 수	‘연 6회의 범위’→ ‘연 12회의 범위’로 확대	1년 2회 이내 분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변경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4조제1항, 안 제37조제2항)

-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안 제34조제1항	· 영 제35조제2항제1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
안 제37조제2항	· 영 제14조제7항	· 영 제14조제8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4. 3. 8.~2024. 3. 28.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0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에 따른 관사”를 “관사”로 한다.

제60조 중 “제49조”를 “제49조, 제51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만원 초과: 1년 2회 이내 분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와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5. (생 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8. (생 략)</p> <p><u><신 설></u></p> <p>⑤ · ⑥ (생 략)</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p>

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생략)

② ~ ⑦ (생략)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1. 영 제35조제2항제2호-----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

----- 12
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
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 3. (생략)

② (생략)

제60조(준용)-----
-----제49조, 제51조-----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1. 50만원 초과: 1년 2회 이내
분납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박종한